

투 자 설 명 서

5

이 투자설명서는 홍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투자신탁5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투자신탁5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홍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투자신탁5호
2. 자 산 운 용 회 사 명 홍국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판매회사명 전화번호 판매회사명 전화번호
 하나은행 1588-1111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09년 9월 30일
5. 투 자 설 명 서 판매회사, [홍국투자신탁운용\(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 금융투자협회
 비 치 · 공 시 및 (www.kofia.or.kr) 홈페이지
 인 터 넷 게 시 주 소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는 투자설명서 내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참조”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투자설명서 본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쪽)

1. 명 칭 : 흥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투자신탁5호(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83309)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흥국투자신탁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2~5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의 최대100%까지를 국내 주식, 채권 등 각 투자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함.
2. 주요 투자전략	- 주식, 채권 등 각 투자증권의 자산 배율 비율은 0~100%까지 자산운용사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항시적으로 또한 유동적으로 변동. - 시장금리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수익 달성을 목표로 운용.
3. 주요 투자위험	-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채권의 이자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높은 수준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주식시장 등 하락에 따른 높은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hkfund.co.kr)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한성조	1964	본부장	156개	49,163억	- 연세대 경영학과 - 채권운용(세종, 흥국투신)
김지훈	1970	본부장	71개	4,006억	- 성균관대 경제학과 - 주식운용 (한국투신, 굿모닝신한, 흥국투신)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 및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 간	최근1년	최근2년	설정일이후
	08.08.12 ~09.08.11		08.05.30 ~09.08.11
투자신탁(%)	4.22		-8.61
비교지수*(%)	1.25		-10.79

※ 비교지수 : KOSPI200 100%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6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종 류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온라인가입자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1%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보수	연 0.750%	연 0.750%	연 0.750%
	판매회사보수	연 0.750%	연 1.750%	연 1.480%
	수탁회사보수	연 0.023%	연 0.023%	연 0.02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7%	연 0.017%	연 0.017%
	기타비용 ²⁾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등		
총 보수 · 비용비율³⁾		1.54% + 기타비용	2.54% + 기타비용	2.27% + 기타비용

-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해당기간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2009.8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시(15시) 이전	오후 3시(15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오후 3시 이전) (D+1기준가격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D+2 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오후3시 경과후) (D+2기준가격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환매청구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지급 (오후 3시 이전)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환매청구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지급 (오후 3시 경과후)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kfund.co.kr)**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9.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I .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흥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투자신탁5호**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분류 증권투자신탁, 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투자신탁명	가입자격
흥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투자신탁 5 호 (Class A)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흥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투자신탁 5 호 (Class C)	제한 없음
흥국 체인지업 주식혼합투자신탁 5 호(Class C-e)	온라인 가입자

4. 자산운용회사 **흥국투자신탁운용(주)**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8. 5 설정 예정
6. 수탁고 추이 [: , %]

	6	1	1	2	2	3
	09.08.11	09.02.11	08.08.11	6	6	
	16	13	18			
가 *	29.12	-28.95				

* 6 가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으로서 장기적 시장 모멘텀을 고려한,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채권 및 주식등에 직접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 및 주식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판매

회사·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운용목표
 - 시장금리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수익 달성을 목표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시장 비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 α 극대화 전략’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종목 Picking을 통해 통제된 위험 하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 주식운용전략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율은 자산총액의 0~100%까지 자산운용사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항시적 또한 유동적으로 변동되며, 자산운용사의 투자분석사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종목선정 및 주가에상승으로 추가적인 이익 획득을 추구합니다.
- 채권운용전략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에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투자하여 적정 펀드 듀레이션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기업신용도 및 회사채 Spread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그룹별로 분류, 점수화하여 회사채 투자의 비중을 결정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신용분석가가 외부신용평가기관 자료, 각종 재무자료, 기업방문, 업종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채 종목에 대한 상세한 신용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종목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등”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 및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2) **시장 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 (3)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 (4)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자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당해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의 투자증권에 100%이하를 투자하여 운용되는 주식혼합형투자신탁으로서 주식시장 하락 등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신탁 위험등급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보다는 낮은 위험수준을 갖으나, 채권형펀드보다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 등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예시^(주1)>

위험등급	분류기준	주요 내용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주식형 펀드
2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는 경우/주식혼합형 펀드
3등급	중간 위험	주식에 50% 미만 투자하는 경우/채권혼합형 펀드
4등급	낮은 위험	채권 및 여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특별자산, 실물자산 펀드 등(신용보강 여부에 따라 조정가능)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펀드

재간접투자기구는 편입한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의 성격에 따라 위험등급이 결정됨

(주1)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흥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주요 내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자산운용회사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매일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운용회사(www.hkfund.co.kr)· 판매회사(인터넷홈페이지 주소는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사항' 중 'II 판매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협회등록번호
한성조	46세 (1964)	연세대 경영학	고려투신, 세종투신 채권운용팀 현)흥국투신 채권운용팀장	2109000189
김지훈	38세 (1972)	성균관대 경제학	한국투신, 굿모닝신한증권 주식운용팀 현)흥국투신 주식운용본부장	219001869

※ 펀드운용은 본부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7. 투자실적

가. 연평균수익률 추이(단위 %)

기간	1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08.08.12 ~09.08.11				
투자신탁	4.22				-8.61
비교지수	1.25				-10.79

주1)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수익율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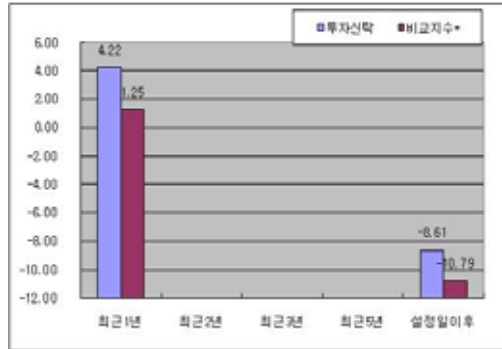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 : KOSPI200 10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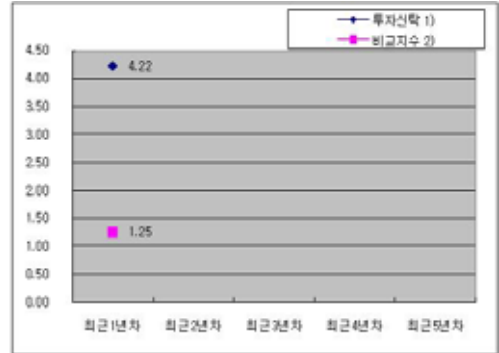
기간	1	2	3	4	5
	08.08.12 ~ 09.08.11				
투자신탁	4.22				
비교지수	1.25				

주1)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수익율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
 주2) 비교지수 : KOSPI200 100%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보수구조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수익자의 가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75%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75%	연 1.75%	연 1.48%	
수탁회사 보수		연 0.02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7%		
기타비용 ^(주1)		-		
총 보수·비용 비율 ^(주2)	연 1.54%+기타비용	연 2.54%+기타비용	연 2.27%+기타비용	

주)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 비율 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실제 운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 각목의 비용을 말합니다.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기타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함
 -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종류 A	99,010	154,000	462,000	770,000	1,154,000
	종류 C	-	254,000	762,000	1,270,000	2,540,000
	종류 C-e	-	227,000	681,000	1,135,000	2,270,000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년 5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매입·환매 및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시[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5시[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15시(오후3시) 경과후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환매

-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⑤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⑥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시[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15시[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3시) 경과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환매수수료

1. 종류 A, C, C-e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이익등의 분배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새로운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운용목표
 - 시장금리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수익 달성을 목표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시장 비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 α 극대화 전략’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종목 Picking을 통해 통제된 위험 하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 주식운용전략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율은 자산총액의 0~100%까지 자산운용사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항시적 또한 유동적으로 변동되며, 자산운용사의 투자분석사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종목선정 및 주가에상승으로 추가적인 이익 획득을 추구합니다.
- 채권운용전략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에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투자하여, 적정 펀드 듀레이션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기업신용도 및 회사채 Spread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그룹별로 분류, 점수화하여 회사채 투자의 비중을 결정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신용분석가가 외부신용평가기관 자료, 각종 재무자료, 기업방문, 업종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채 종목에 대한 상세한 신용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종목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및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본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자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당해 수익증권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주식	10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채권	10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어음	100%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함
수익증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5%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7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이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5%이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 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투자제한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 용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합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 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주식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이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채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이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제37조제1항제8호, 이조 제1항제2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 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일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 가격. 단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 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상기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관련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릅니다.

2.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운용회사(www.hkfund.co.kr)·판매회사(인터넷홈페이지 주소는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중 '11 판매회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거래

①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다. 마케팅비용
-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2.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15시(오후3시) 경과후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1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 ①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전전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탁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등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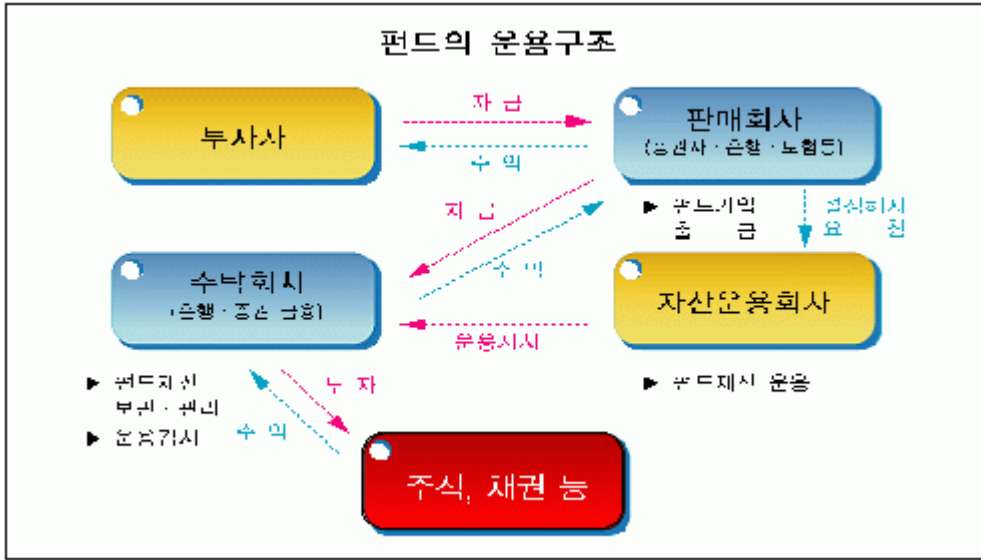
-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상환금 등의 지급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약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명칭	흥국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빌딩12,13F Tel) 02-768-6500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08.23 태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 2000.02.11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 2000.02.16 태광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 2000.06.19 자산운용업 등록 - 2003.08.29 흥국생명 자산운용본부 통합 - 2006.03.20 흥국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2. 주요 업무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제9기 (‘09.3.31)	제8기 (‘08.3.31)	항 목	제9기 (‘09.3.31)	제8기 (‘08.3.31)
유동자산	14,693	13,879	영업수익	6,962	7,099
고정자산	673	704	영업비용	5,653	5,546
자산총계	15,366	14,583	영업이익	1,309	1,553
유동부채	265	457	영업외수익	1	4
고정부채	75	61	영업외비용	10	-
부채총계	341	518	경상이익	1,300	1,557
자본금	10,000	10,000	특별손익	-	-
이익잉여금	5,025	4,065	세전순이익	1,300	1,557
자본총계	15,025	14,065	당기순이익	959	1,086

4. 운용자산규모

(단위: 억좌, 2009.7.31 현재)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	합계
수탁고	1,009	9,402	20,697	26,237	3,550	60,895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한성조	1964	본부장	156개	49,163억	- 연세대 경영학 - 89~98 고려증권, 고려투신 - 99~01 세종투신 - 01~현재 흥국투신운용	본부 운용
김지훈	1972	본부장	71개	4,006억	- 성균관대 경제학과 -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 97~00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운용 주식운용 - 06~08 굿모닝신한증권 주식운용 - 08~09 디케이프라이빗에쿼티 - 09~현재 흥국투신운용	본부 운용

※ 펀드운용은 본부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명칭	하나은행(www.hanabank.com)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Tel : 2002-1111)
연혁	- 1971. 6월 : (주) 한국투자금융 설립 - 1991. 7월 : 하나은행으로 사명 변경

2. 주요 업무

-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수익증권 판매
2. 수익증권 환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판매회사의 책임

-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

- ①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함)
 -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5.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6.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
 - 7.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8.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9.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 10.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11. 판매회사가 금전의 대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금전의 대여를 조건으로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12. 판매업무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게 하거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게 하는 행위
 - 13.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간접투자기구 또는 간접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전(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행위
 - 14.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직원이 수탁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고유재산의 운용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행위
- ② 판매회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직접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 금융투자협회는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명칭	(주)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Tel 1566-2566)
연혁	홈페이지 참조 www.ibk.co.kr

2. 주요 업무

-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제3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
 2. 제1호의 투자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의 선관의무

-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의 책임

-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운용행위감시

-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①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② 수탁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명칭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Tel) 02-
연혁	- 2000.06.15 회사 설립

- 2000.06.28 흥국투자신탁운용 수익증권 사무수탁대행계약 체결
- 2001.09.16 자체사옥 입주

2.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및 주소/연락처

회사명	KIS채권평가(주)	한국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Tel) 02-3770-040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Tel) 02-399-335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43번지 대인빌딩 15층 Tel) 02-739-2545

- 연혁

KIS채권평가(주)

일 자	연혁
2000. 06. 20	설립
2000. 06. 3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1. 01. 01	한경-KIS 채권지수 발표
2002. 07. 02	증권업협회-KIS-한경 기업어음지수 개발

한국채권평가(주)

일 자	연혁
2000. 05. 29	설립
2000. 07. 0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2. 05.	벤처기업 선정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나이스채권평가(주)

일 자	연혁
2000. 06	설립
2000. 0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1. 10	나이스채권지수(NICE Bond Index)발표

2. 주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자기구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자산운용회사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간접투자자기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구성 및 권한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④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의 종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②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합니다.
- ③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④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⑥ 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합니다.

운영

- ①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등

- ①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연기

- ①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① 수탁회사, 신탁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수익자명부

- ①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약관·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 위 ⑤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⑦ 위 ⑥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신탁약관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⑧ 자산운용회사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잔여재산분배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 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각 회사별 손해배상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련 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②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kfund.co.kr) 또는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 영업보고서

서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결산서류 등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상기의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간접투자자 및 간접투자기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인인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기준일) 현재의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투자신탁회계기간의 말일
 - 다.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당해 기준일까지의 기간(당해 운용기간)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3. 기준일 현재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간접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당해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기준일 현재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내역
 6.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매월의 주식, 주식 외의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8.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9.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
 10. 그 밖에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모 투자신탁에 대한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탁약관의 주요 변경사항
 2.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4.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5. 자산운용회사와 이해관계인간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사항
-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는 제4항의 수탁회사보고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 자산운용보고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수시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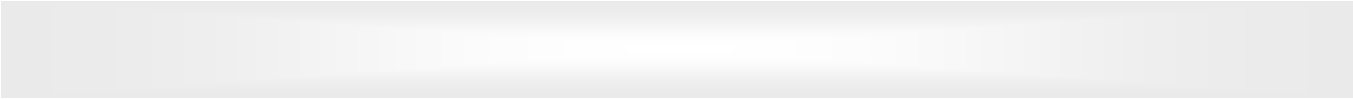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신탁약관의 변경

- ① 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이 신탁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투자신탁의 의결권 행사

-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때에는 간접투자자가 당해 의결권행사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지침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④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규정에 의한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_____ 5

: _____

[) _____ () _____ .

_____ ()